

[별지 1] 전 분야 필수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지원 신청서

지원 분야	☐ 우수장학생 (☐ 종합대 ☐ 전문대) ☐ 일반장학생 (☐ 종합대 ☐ 전문대) ☐ 특정장학생 (☐ 종합대 ☐ 전문대) (☐ 다자녀 ☐ 다문화 ☐ 북한이탈가정) ☐ 특기장학생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 안에 체크(✓) 바랍니다			
신청자 정 보	성 명		성 별	
	연 락 처	* 연락 가능 번호 기재		주 민 등 록 호
	주 소	(우편번호:) * 광산구 관내 도로명주소로 기재		
	소 속 (학 교)	학교	학과(부)	학년
본인은 2026년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에 지원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인)				
후원 여부	※ 귀하 또는 가족이 광산장학회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후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 그렇다 (202 년 월 일, 회 / 원) ☐ 그렇지 않다			
[후원안내] o 장학금 기탁 의사가 있으신 분은 (재)광산장학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o 사무국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 062)960-7926 / Fax 062)960-3715 [후원방법] o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 ※ 자세한 사항은 (재)광산장학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람 [후원자 혜택] o 장학생 선발에 가점,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완료 후 보완서류는 받지 않음

[별지 2] 학교 서식이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우수 장학생 필수)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대 학 :
학 과 :
학 년 :
학 번 :
성 명 :

(단위 : 원)

연도	학기	등록금	장학금		실 납입금	수혜장학종류	지급기관
			학비감면	비학비감면			
2026	2	4,950,000	300,000 337,500	1,500,000	2,812,500	국가유형 I 장학금 국가유형 II 장학금 광산장학회 장학금	국가 국가 광산장학회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지원이며, 비학비감면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금임.
※ 장학금 수혜금액이 없을 경우 금액란에 “해당없음” 기재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장학금 수혜 사실을 증명합니다.

[확인 자]

소 속 :
성 명 : (서명/인)
연 락 처 :

oo대학교 학생처장 또는 총장 (직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3] 학교 서식이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특기 장학생 필수)

학교장 추천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연락가능번호 기재(부·모 연락처 기재)			
	학교	학교		학년	반
특기사항	종목	대회명	대회기간	주최기관/단체명	입상성적
[유의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5.8.25.~'26.8.24.) 개최한 대회에 한함 ○ 개인 부분 입상 성적 3위 이내인 자 ○ 2026년도 1월 ~ 8월 내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자 제외					
위 학생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6 년 월 일 [확 인 자] 소 속 : _____ 성 명 : _____ (서명/인) 연 락 처 : _____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별지 4] 전 분야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귀중

(재)광산장학회(이하 재단이라함.)이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장학금 이종수혜를 확인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및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 및 (재)미래에셋희망재단 등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목적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장학대상자 장학금 이종수혜 확인 및 선발, 홈페이지 게시, 공지사항 안내 등을 위한 연락, 재단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학교, 학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학자금 지원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법령상의무이행, 민원처리, 재단 정관 제4조(사업)관련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 및 (재)미래에셋희망재단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본인의 장학금 지원심사 및 (재)미래에셋희망재단에 장학생 추천, 선발결과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활용, 장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내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개인식별정보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장학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생 선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의 경우 반드시 본인과 보호자 모두 날인

[별지 5] 우수 장학생 필수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재)광산장학회의 장학생 신청인으로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 류
중복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업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학 자 금 종 류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2026 년 유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